

파주시 방재성능목표 공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「파주시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9일

파 주 시



1. 목 적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,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도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·공표함
2. 근 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영)
3. 방재성능목표

지 역 명	강우지속기간		
	1시간	2시간	3시간
파 주 시	105mm	160mm	205mm

4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영) 대상

- 근거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5(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)
- 대상지역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)
- 대상시설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 지역에 설치된 방재시설

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 시설 중 유수지(遊水池)

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

라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
※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대상 시설(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-55호)

- 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
- 2)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·시설 중 빗물 펌프장
- 3)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
- 4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
- 5) 「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고지(高地)배수로

5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

○ 도시지역*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**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

- 평가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***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방재성능목표 적용

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)

** 하수관로, 배수(빗물)펌프장, 우수유출저류시설, 저류지, 유수지, 소하천 등

*** 기존 방재시설 정비(신설·증설·확장 등) 또는 배수구역 내 홍수량 분담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(우수유출저감시설, 고지배수로 설치 등) 등의 구조적·비구조적 개선대책

○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*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

- 평가결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** 방안 검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적용

*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의 계획(규격·규모 등)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재현기간(설계빈도)을 적용하여야 함

** 홍수량 분담을 위한 유수지, 우수유출저감시설,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개선대책

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부터